

외래 출강에 관한 규정

제정 1996. 04. 03.

제8차 개정 2019. 07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외래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래출강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 대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.

제3조(허가기준) 외래출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허가한다.

1. 외래출강의 주당 환산 시간수가 학기당 5시간 이하이며, 연간 9시간 이하일 때. 다만, 대학원 강의와 특별한 경우에는 연간 15시간까지 가능하며, 이 경우 학기당 9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07.1.29)
2. 본 대학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(개정 2007.1.29)
3. 교원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(개정 2007.1.29)

제4조(허가) ① 본교 외의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이 공개채용등 채용절차에 지원하는 경우, 지원하기 이전에 외래출강허가원(별지 제1호 서식)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대학교가 아니거나 별도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학교 출강을 허가 받은 교원은 외래출강이 확정된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외래출강현황표(별지 제2호 서식) 및 전임교원 강사출강 겸직허가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11.23., 2018.05.17., 2019.06.25.)

[전부개정 2019.07.17]

제5조(외래출강 금지자)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보직교원과 책임시간에 미달되는 교원은 외래출강을 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2.2.6)

제6조(무단 출강자 조치) 허가 없이 무단 외래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1차로 경고하고 차후 재발 시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937, 2004.11.23)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5, 2007.1.29)

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, 2015.01.05)

이 규정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70, 2018.05.17)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75, 2019.07.17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4조(허가)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